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부겸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·결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종전에는 매장용 유골함의 용기를 자기,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11. ~ 4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·결정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

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·결정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하고,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·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의3(중전의 제8조의2) 제3호 중 “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”를 “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”를 “수행하기 어렵다”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”를 “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”를 “수행하기 어렵다”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)”을 “(묘의 형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매장하되”를 “매장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유골함의 규격과 재료)”를 “(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

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그 재료 또는”을 “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매장용 유골함: 다음 각 목의 용기

가. 자기,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

나.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

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안치용 유골함: 자기,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

제17조제1항제3호(중전의 제2호)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용기

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매장용 및 안치용”을 “안치용”으로, “21센티미터”를 “21센티미터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18센티미터”를 “18센티미터 이내”로 한다.

1. 매장용 유골함

가. 제1항제1호가목의 유골함: 지름 21센티미터 이내, 높이 22센티미터(뚜껑 2.5센티미터 포함) 이내

나. 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: 지름 18센티미터 이내, 높이 19센티미터(뚜껑 5센티미터 포함) 이내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권한 중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,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한다</u> .	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신설>	제8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·결정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
	<u>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 <u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u> <u>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</u>
<u>제8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</u> 국가보훈처장은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	<u>제8조의3(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위원으로 적합하지

<u>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<u><신 설></u> 제10조의2(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)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(생략) 제14조(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) ① ② (생략)	<u>않다고</u> ----- ----- 4. ----- <u>수행하기 어렵다는</u> ----- ----- 5.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(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위원으로 적합하지</u> <u>않다고</u> ----- ----- 4. ----- <u>수행하기 어렵다는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묘의 형태 등) ①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1. ~ 9. (생략)	<u>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제외한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	
연락처	(044) 200 - 6676